

# 과업지시서

## I. 과업 개요

1. 과업명 : 2026년도 덩굴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
2. 목적 : 임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덩굴 제거 작업으로 임목의 생장 제고 등
3. 대상지
  - 위치 : 우곡면 사전리, 예곡리, 쌍림면 합가리 일원
  - 면적 : 40.0ha
4. 과업의 내용
  - 제시방서 작성
  - 기타 지시 사항
  - 설계설명
5. 과업 기간 :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0일간

## II. 과업 수행 준수사항

1. 본 설계의 용역 시행 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하고, 다음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  - 용역 기간 중 강수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보다 많아 과업 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
  -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
  - 발주처 지시에 따라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
  -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2.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, 수행 계획표, 대리 인계, 용역 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3. 용역 수행자는 작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기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수 현지 조사를 시행한 후 현지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작업 종별 설계 대안을 수립하여(기본설계도서와 현지 틀릴 때 발주자의 심사 결정을 받은 후)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.
4.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  -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(산림청훈령 제1454호, 2020.6.15 개정) 및 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(산림청훈령 제1502호, 2021.08.09 개정)

5.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 수행 준수 사항과 기본적인 과업 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할 일의 성과가 수준급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.
6. 용역 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.
  - 과업 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 지침
  - 대상지 정보(지번별조서 등)
  -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
7. 용역 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할 책임을 진다.
8. 용역 수행자는 설계 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기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9. 본 과업 지시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,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수집,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10. 본 과업 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.
11. 용역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용역 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- 모든 성과품은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.
  -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.
  -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진다.
12. 본 과업은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진다.
13. 본 과업 수행상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.
  -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
  -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- 위 각호의 사유로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 가격 및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

14.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하면 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.

-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- 감독관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
- 기타 계약조건에 중대하게 위배할 때

15. 설계 도서에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 책임 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### III. 과업 수행 원칙

#### 1. 일반사항

-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,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시행에 장애요인 발생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다.
- 설계사업비 예산은 「덩굴 제거 설계·감리 및 사업 시행 기준」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조사 결과 현지 여건,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의 대폭 증감은 예산편성 사업비 안의 범위에서 조정 설계할 수 있다.
-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하고 발주자가 제시하는 예산편성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고 집행 가능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.
-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-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## 2. 사전 조사·확인

- 사전 조사·확인은 고급 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.
  - 발주된 사업대상지를 도면으로 작성하고, 현장 확인을 통한 작업 불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덩굴제거작업이 필요한 지역만 대상지로 적용한다.
- 덩굴 제거대상지를 확정하고 추후 진행 방향을 담당 발주자와 협의한다.
  - 대상지로 확정한 면적이 발주 면적보다 적을 때 → 추가 대상지 제공 요청
  - 추가 대상지 확보가 곤란할 경우 → 실시설계비 조정 → 계약 변경

#### 3. 표준지조사

- 표준지조사는 고급 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이 1조가 되어 수행한다.
- 표준지 조사 비율 : 사업대상지 면적의 0.5% 이상으로 한다.
- 표준지 크기 : 50㎡(반지름 4m 원형 또는 5m×10m 직방형)를 원칙으로 한다.
- 표준지 배치

-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상, 중, 하에 고루 배치한다. 단, 1ha 이하로 독립된 대상지는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표준지를 배치한다.
- 표준지 내에 있는 흙덩굴은 주두부 수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덩굴의 지상부를 낮으로 모두 제거한다.
- 표준지 조사 방법
  - 조사 인력 : 2인 1조(고급 기술자 1인 + 초급기술자 1인)
  - 표준지 표시
    - (직방형 표준지)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(길이 0.5m)로 둘러서 표시한다.
    - (원형 표준지) 표준지 중앙부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(길이 1.0m) 2겹으로 둘러서 표시한다.
  - 조사 내용 : 표준지 위치(GPS 좌표),  
덩굴뿌리 본 수 조사 - 주두부 직경 1cm 이상인 흙덩굴만 수량으로 조사하고 당해 연도 발생한 세근은 조사하지 아니한다.
- 표준지 조사 결과의 활용
  - 덩굴 제거 단가 산출자료로 활용

#### 4. 작업자 교육

- 작업자 교육은 실시설계 책임 기술자가 설계 용역 건당 1회(1일 기준) 실시한다.
- 교육 내용에는 설계 목적, 작업지 현황, 작업량과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# IV. 실시설계의 내용

실시설계를 작성하기 전에 지역산림계획, 산림경영계획과 상충하지 않게 설계하여야 하며,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도서에는 책임 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.

- 설계설명서
- 소반별 시방서
- 작업 지시도(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[별지 제9호 서식])
- 실시설계 표준지 배치도(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[별지 제10호 서식])
- 사업 시행 예정 공정표
- 사업비 원가계산서
- 설계내역서
- 사업대상지내역서
- ha당 덩굴 제거 단가 산출서
- 덩굴 제거 표준지 조사야장(덩굴 제거 설계·감리 및 사업 시행 기준)
- 덩굴 제거 설계표준지 상세도(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[별지 제37호 서식])
-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

## V. 성과품

### 1. 성과품 작성

- 실시설계도·서는 고급 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.
- 수급자는 계약기간 내 성과품을 작성, 감독관청에 납품하여야 한다.
- 설계와 관련된 협의 심의도서 등은 감독관이 요구 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, 단 감독관 지시에 의거 증감할 수 있다.
- 성과품 작성은 “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”과 “풀베기 설계·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 기준”에 따른다.

### 2. 성과품 납품 명세서 및 수량

- 설계서 5부, 설계도면 5부
- 상기 사항이 포함된 전자기록 매체(CD 또는 USB)

## VI. 과업 수행 시 유의 사항

- 본 과업 지시서상의 문구, 용어의 해석, 과업의 범위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하면,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제반 성과품은 납품 이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 사항은 완전히 수정 보완 후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기간도 용역 일수로 간주한다.
- 납품 검사 후라도 지적 사항이 있거나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즉각 보완 조치해야 한다.
-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보완(변경)설계에 응해야 하며, 이때에는 발주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.
- 공사 착수 후 시공 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설계내역 및 도면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가 정하는 날짜 안에 용역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조사 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토록 함으로써 자연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설계상 필요할 시는 비교 설계안을 작성 제시하여 선정토록 한다.
- 본 용역 설계는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특정 분야 및 일정한 부문에 대해 관련 전문가(자문위원) 등과 상호 협력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.